

제9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09. 2. 2(월), 14:00~18:00

2. 장 소 : 윤곡관 제1회의실(윤곡관 204호)

3. 참석 : 총 13명 중 10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원희 부의장, 이순일 평의원, 오상탁 평의원, 이화숙 평의원, 최인규 평의원, 이해진 평의원, 김관균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박상호 평의원, (이중한 간사)
- 불참 평의원 : 유승화 평의원, 유승익 평의원, 김찬영 평의원(3명)

4. 회의안건

- 논의사항: 대학평의원회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
- 자문사항
 -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분 예산(안)
 - 2008학년도 교비회계 본교분 제2차 추경예산(안)
 - 2009학년도 의료원 본예산(안)
 - 2008학년도 의료원 1차 추경(안)
 - 2009학년도 교비회계 의대분 본예산(안)
 - 2008학년도 교비회계 의대분 2차 추경(안)
- 심의사항: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5. 제2기 대학평의원회 의장·부의장 선출

간사가 평의원회 임원진 구성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의 동의에 따라 이일영 평의원이 임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평의원 이일영 : 저희가 지난해에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것이 정관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사 이중한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33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이일영 : 우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니다. 의장부터 선출을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새로운 평의원들께서는 제1기 대학 평의원회 임원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르시니, 간사께서 제1기 임원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중한 : 1기의 의장은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일영 평의원, 부의장은 이원희 평의원, 그리고 간사는 기획팀장인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평의원 이일영 : 그럼, 호선을 해주십시오.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1기 대학평의원회 의장님의 계속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1기도 무난히 운영을 하셨지만, 지난 1년간 경험을 쌓으셨으므로 2기에는 더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1기 대학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님을 그대로 재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의원 오상탁 : 제청합니다.

평의원 이일영 : 1기 의장, 부의장을 그대로 연임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동창회장님께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들이 좀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동창회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주로 대학 내의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무리 없이 의장직을 수행하여 주신 이일영 평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일영 : 그럼, 다른 안이 없으시면 1기의 의장, 부의장이 연임하는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개회선언

의장 이일영 : 그럼, 지금부터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대학평의원회 안내

간사 이중한 : 새로 위촉된 평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또한 대우학원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35조를 보시면 대학평의원회의 기본 기능이 7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학

< 간서명 란 >

의 장



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의자료에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명단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처 기획팀에서 업무지원을 하며, 기획팀장이 당연직 간사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동문대표 1인과 학생대표 1인이 증원되어 오늘 두 분의 새로운 평의원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8. 논의사항 : 대학평의원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

간사 이중한 : 논의사항인 대학평의원의 위촉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평의원의 임기가 12월 중에 시작됨에 따라 이번 평의원의 임기를 정하는 데에 학교의 회계기간 또는 학년도 등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나중에 위촉된 2분의 위촉기간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관에 임기가 단순히 1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의원회 규칙에서 학년도 단위로 개정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되어 평의원회 규칙에서 임기를 정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평의원의 위촉기간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신다면 다음 회의에 회의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네, 사실은 임기가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제2기 교수회 대의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에 제2기 대학평의원을 선출해야 해서, 교수대표 평의원들은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회도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까?

평의원 최인규 : 학생회 회칙이 존재하는데 회칙상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적으로 1월 1일에 임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례상 12월 기말고사 기간에 인수인계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학년도 등록금 협의회도 인수인계 받은 2009학년도 학생회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회에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평의원 임기가 3월 1일부터 시작되면 학생회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평의원 최인규 :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칙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

< 간서명란 >

의장



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렇다면 학생회를 대표한 평의원 2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당시 학생회장과 새로 선출된 학생회장이 함께 들어온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 입니까?

평의원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일영 : 평의원 임기를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하면 총동창회에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총동창회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평의원 이해진 : 총동창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몇 조입니까?

간사 이중한 : 현재 임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의원회 규칙에 임기를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첫 평의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2007년 12월에 구성이 되면서 1년 임기가 12월 20일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은 영속성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이사를 선임할 때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영속성이 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장 이일영 : 상위법에 임기를 1년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간사 이중한 : 네. 정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사립학교법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기 규정은 정관에 있으므로, 임기를 고치려면 정관을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사항은 정관 상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사 이중한 :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우선 평의원의 임기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제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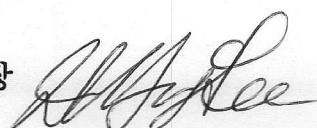
평의원 이해진 : 동의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지금 선임된 평의원의 임기는 2010년 2월 28일까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간사 이중한 : 네, 경과규정으로 “현재 위촉된 평의원은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 간서명 란 >

의장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것을 포함해서 동의해주시는 것이죠?

평의원 이해진 : 동의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대학평의원은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바와 같이 임기가 수정되면 1월 28일까지 선임을 하기 위한 선임절차가 동계방학 중으로 미뤄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수정안을 준비해 오셔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의결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 신중하게 안을 만들어서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일영 : 그러면, 다음번 평의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안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평의원회 임기변경에 대한 제안은 있는데, 그것이 문안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보지 않고서 논의하다보면 혹시라도 평의원회가 간과하는 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받은 위촉장 상의 임기가 변경이 제안되는 임기와 달라 공백 기간 또는 임기연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경과규정 문구에 어떻게 담아 처리할 것인지 다 짚어보시고 만든 안을 가지고 다음 평의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의장 이일영 : 이순일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이순일 교수님의 의견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차기 평의원회에서 자세한 안전을 가지고 임기에 대한 것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는 것이 안이시죠? 거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회의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식으로 이 안전을 성문화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안전 심의는 의료원/의대 예산(안), 아주대학교 예산(안),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 자문사항

가. 의료원/의과대학 예산(안)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 예. 그러면 2009학년도 아주대학교 병원 및 교비(의과대학 등) 회계 예산(안) 및 2008학년도 추가경정(병원 1차, 교비 제2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9학년도 병원회계 본예산(안) 수입 및 지출

< 간서명 란 >

의장



358,361,6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 2009학년도 교비(의과대학 등)회계 본예산(안) 수입 및 지출
59,253,6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 2008학년도 병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입 및 지출
351,361,1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 2008학년도 교비(의과대학 등)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입 및 지출
52,675,600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이일영: 2009학년도 의료원 본예산(안) 및 2008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부속병원 건축비 상환과 관련하여 2008년 70억, 2009년 95억 총 165억의 자금을 법인에서 병원으로 지원 또는 지원예정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부속병원 건축비 상환은 잔액 165억 중 2008년 70억을 기상환 하였으며, 2009년 95억을 상환할 예정이며, 이로써 부속병원 건축비 부채는 전액 상환될 예정입니다.

의장 이일영: 부속병원 건축비 부채 313억원의 상환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부속병원 건축비 부채 313억원의 상환주체는 법인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전년대비 교비회계 전출금이 19억 감소되었고, 법인전출금은 66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감소된 자금 85억이 2009년 예산상 병원에 유보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이는 2008년 추경예산 편성시 병원 웰빙센터 신축을 위하여 법인전출금 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결과에 따라 본 예산편성에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병원 웰빙센터 관련 위치가 어디이며, 용도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병원 웰빙센터 위치는 별관건물 옆 팔각정자 부근 공원이며, 건물의 용도는 건강증진 센터 및 암센터, 외래 특성화 센터 등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전체예산에서 예비비 비중이 몇 %인지, 1%가 안되는 예비비로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 간서명 란 >

의장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교비(의과대학 등)회계의 지출은 큰 변동없이 집행되고 있고, 병원회계의 예비비도 규모는 많지만, 심의과정을 통해 임금인상 및 긴급사업 대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예비비를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추경예산과 본예산의 예비비 편성금액의 변동사항이 무엇입니까?

기획팀장 이상재: 추경예산은 당초 편성된 예비비 20억을 의료원의 긴급사업(수선공사 등) 등에 소진한 결과이며, 본예산 편성시 긴급사업을 대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의과대학 등록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의과대학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 관련하여 학부와 대학원의 정원을 50:50으로 운영을 결정한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수가 감소하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타병원의 경기 남부권으로 진출 등(서울대학병원의 오산진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의료원은 장기적인 5개년, 10개년 발전계획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는 이러한 의료원, 학교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강구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삼성, 아산병원 등 재단의 지원이 있는 병원, 현금 유보가 많은 성모병원 등의 규모 확대는 큰 어려움없이 추진 될 수 있지만, 의료원의 현 상황은 세브란스 의료원의 규모확대 방식처럼 법인, 학교, 동문, 교직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에 대안이 없는 현실이며, 규모 확대만이 아닌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내부역량의 강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규모 확대의 실행은 비록 현재의 여건이 불가능할 지라도 세브란스병원의 사례처럼 명확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규모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 등이 이루어질때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원, 법인, 동문 등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 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예. 현재 의료원에서는 병원 웰빙센터 신축 추진을 계기로 기존 외래공간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특성화된 진료센터 확대 등 현 여건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대학평의원들에게 예산(안) 검토를 위한 자료가 사전에 배포 되었습니까?

평의원회 참석의원 전원: 예. 사전에 받았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의료원 예산 중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편차가 발생하는 항목이 일부에서

< 간서명 란 >

의장



나타나는데 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전산장비의 추경예산과 본예산과의 증감사항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명철: 의료원의 EMR 구축을 위하여 당초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20억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 등의 사유에 따라 이월되어 2009년 56억 전액을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차이입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본교 예산(안)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가 오늘 자문을 구할 사항은 2008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및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입니다. 우선 2008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8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수입
142,737,715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 2008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지출
142,737,715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이일영 : 교비회계 본교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 작년 12월에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작년 12월에는 수입대응지출증가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는 그 외의 항목들에 대한 부분 및 결산을 대비하여 정리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수입 162,127,419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 지출 162,127,419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이일영 :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원희 : 10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소는 어떤 이유입니까?

예산팀장 배영환 : 교직원 중 일정 비율(2%)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교내에 계신 미등록 장애인을 등록하게끔 할 예정으로 당해년도부터는 편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2008학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10페이지 관리운영비 항목에 자금운용수수료 68백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대학이 기금 등을 예금 외의 다른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현재의 자금운용 상태는 어떠한지, 자금운용의 결과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자금운용의 결정은 누가 어떤 경로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자산운용 상태가 투명한지를 확인하는 것도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본부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연간 상시 운용 자금을 이자율이 거의 없는 보통예금보다는 약 3~5%의 이자율이 있는 단기 MMF 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생하는 수수료가 약 0.19%입니다. 예전에는 이자수입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수입을 편성하였는데, 이자수입을 100% 표시하고, 수수료 항목을 별도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산팀장 배영환 : 예금 이자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 등을 결산에서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이일영 : 예산 뿐 아니라 결산 또한 자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7학년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현재 알게 되어서 저희가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 간서명란 >

의장



다. 2008학년도 결산(안) 자문시 총무처에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2009학년도 본예산(안) 13페이지 토지 매입 부분에 병원 16억 원, 학교 16억원, 법인 16억원 부담 예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부담하는 토지매입비 16억원의 재원은 무엇입니까? 병원에서는 진료수입에 의한 수익이 있으나 학교에는 등록금 수입이 적립된 금액 이외에는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 돈이 없어서 학교가 16억원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의료원 예산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2008학년도에 법인에서 의료원으로 70억원의 전입이 이루어졌으며 2009학년도에 추가로 95억원의 전입이 있을 예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병원으로 총 165억원의 현금 전입이 가능하다면 재단이 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5페이지 법인 전입금 교내사유지 매입 부담은 994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07학년도에 606백만원 별도 전입되어 전체 16억원의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이 부담하는 16억원의 내역인 것 같은데, 지난 12월에 열린 평의원회 회의록을 보면 ‘교내 국공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경상비 전입금은 얼마 입니까?’라는 질문에 ‘2007학년도 결산시 6억원이 법인 전입되어 있고, 올해 교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하여 3억원 지원받을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즉, 2007학년도 전입금 606백만원이 향후 교내사유지 구입비에 충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설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단의 교내사유지 구입비에 대한 전입 내용이 불명확하기에, 최근 5년간 토지 구입 명세 및 이에 사용된 자금의 분담 내역을 알려주시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배포하신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매입한 공유지, 시유지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2007학년도 37억원으로 매입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인에서 들어온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렇다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2006·2007학년도에 이미 약 20억원을 부담하였고, 추가로 2009학년도에 16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6억원이 토지 매입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교육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해주면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법인에

< 간서명 란 >

의장



돈이 없으므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교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원에는 165억원을 지원하는데 왜 본교에는 지원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료원 예산(안) 설명에 참석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니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제가 아는 바로 예전에 의료원에 313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법인에서 약속하기를 313억원은 법인에서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법적 서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약 10년간 313억원의 채무를 청산해준 것입니다. 의료원이 초기 설립시 막대한 부채를 지녔기 때문에 이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지우게 될까봐 법인에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법인, 본교, 의과대학, 의료원이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직에 큰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부채를 빨리 털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에 돈이 있으면 토지 매입을 법인에서 하겠지요. 자산 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무처장께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일 평의원 말씀과 같이 예산은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문을 갖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평의원 이순일 : 2003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의 법정부담금에 대해 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평균 20%밖에 되지 않으며, 2008학년도 부담 비율도 40%대입니다. 지난 6년간 대학이 충당한 법정부담금을 다 더하면 대략 74억원인데, 이만큼 교육과 연구에 투자되지 못했으므로, 대학 운영에 큰 제약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배포한 자료 중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법인 전입금 내역을 보시면, 과거 법인의 재정현황이 좋을 때에는 법인에서 100% 부담을 해주었으나 법인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100%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2008학년도에 의과대학을 포함하여 65% 수준을 맞추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기준으로 65% 수준을 맞추면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실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물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법인이 100% 부담하지 못하면 학교에서 낼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는 권장사항은 아니고 허용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법인이 어려워서 100% 부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예산 검토를 통해서 지금까지 법인에서 부담하지 않은 금

< 간서명란 >

의장



액(토지 매입, 법정부담금 등)에 대한 누적기록을 남겨서 추후에 법인 재정현황이 좋아지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회의 내용이 기록되므로 기록에 남기고 자료로 따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의료원과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본교는 초반에 전물을 법인에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빚을 내어서 전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그 부채의 일부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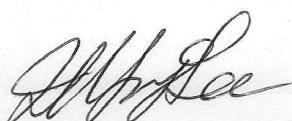
평의원 이순일 : 특수대학원(책임운영부서) 2009학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4페이지에 나타난 특수대학원 등록금 수입은 21,680백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특수대학원 중 책임운영부서는 지출을 하고 나서 차액부분 중 일부는 본부에 O/H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체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책임운영부서 제도를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시기가 지난 만큼 O/H 부담률 및 운영형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등록금 수입 외에 유일한 수입원이 책임운영부서의 수입인 만큼 대학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지출의 차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2009학년도 예산 기준으로 전체 책임운영부서 특수대학원의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차액이 약 9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업료의 20~30% 정도를 학교에 O/H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자체 적립하고 있습니다. O/H 납부금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운영제도 도입 초기에는 30%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책임운영부서 특수대학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하는 책임운영부서 평가 항목에 본부 O/H 납부 규모가 포함되어 있으며 납부율도 높습니다. 우리 대학 특수대학원이 활성화된 부분에는 책임운영제도가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자체 감사 및 평가 등을 통해서 운영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2009학년도 등록금이 동결되었는데, 등록금협의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협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의 8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였는데, 동결 이후에도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IMF 시절에 많은 학교가 등록금을 동결하였으나 그 차기년도

< 간서명 란 >

의 장



에 전년도 미인상분을 포함하여 대폭 인상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010학년도에 추가 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물가 인상에 비해서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매입, 건물 신축 등에 대해 지출하는 부분이 큰 만큼 등록금에 모두 의존하기 보다는 수익사업을 통한 다른 수입원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투자와 관련하여 1~2인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난방비, 전기, 수도료 등에 대한 병원과 학교의 용어가 차이가 나서 혼선이 있습니다. 또 본교 예산(안)에서는 공과금이 인상되었는데 병원 예산(안)은 동결되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병원 측에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 용어의 차이는 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을 따르므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8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및 2009학년도 교비회계 본교 본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겠습니다.

10. 심의사항: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간사 이중한 : 다음으로 학칙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칙은 평의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여야만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칙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학처 소속의 입학사정센터, 기초교육대학 소속의 의사소통센터 신설입니다. 둘째, 한국어학당,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등의 업무지원부서가 교무처 및 학생처에서 대외협력처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과학 연계전공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별표 5에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2008학년도 제15차 교무회의(2008.12.16)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여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의과학(이학사)이라는 것이 의과대학에 포함되지 않고 자연과학대학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사 이중한 : Pre-Medi Course 형식으로 이과대학에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의장 이일영 : 학사입니까? 학사이므로 4년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간사 이중한 : 네

의장 이일영 : 몇 명이나 모집하는지 아십니까?

간사 이중한 : 연계전공이므로 모집정원이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의학전문대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간사 이중한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난 번 회의 때 질의를 드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학칙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칙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학칙 아래의 하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위 규정 중에 학칙에 규정된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간사 이중한 :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예를 들자면 지난 번 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8차 회의록 39페이지 참조), 교수회 규칙 변경 같은 것이 자꾸 이루어지는데 평의원회에서 한 번도 이에 대해 다른 적이 없습니다. 교수회의 대표들이 평의원회의 대표가 되는데 대표를 파견하는 기관의 규칙을 바꾸는 것을 평의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알아보고 답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을 지적합니다. 직원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저희 교수회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간사 이중한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 교수회에 대한 규칙이 그동안 우리가 발의를 해서 총장님이 서명을 하면 정식으로 교수회 규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간사 이중한 : 네

의장 이일영 : 그런데 교수회 규칙 자체는 평의원회에 상정되는 성격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중한 : 교수회칙은 교수회 내부에서 발의하여 규정류조정위원회를 거쳐 교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교수회의 규칙이 바뀌는데 그 규칙이 평의원회에 오지 않느냐는

< 간서명 란 >

의장



말씀입니다.

간사 이중한 : 네, 평의원회에는 상정되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학칙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상 학칙의 취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수회 운영규칙에서 교수회의 구성과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교수회의 구성과 기능을 달리할 경우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위 규칙을 개정하여 교수회 대표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해버리면 평의원회에서 권한이 없어지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것을 바꾸는데 한 번도 평의원회에서 언급이 안 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행정부서건 아니면 법을 전공하시는 분이건, 이것에 대하여 명쾌한 정의를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된 사항들 중 학칙은 아니지만, 그 아래서 바뀌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정(안)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의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무엇을 저희가 다루고 무엇을 다루지 않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간사 이중한 :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평의원회의 6가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각 대학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연간 교육과정이 1년에 한 번씩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과연 그 부분을 평의원회에 상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 부분을 기획팀에서 답변할 수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리고 강의 및 강사료 지급규칙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규칙이므로 학칙이 아닌 것입니까?

간사 이중한 : 네

평의원 이순일 : 그런데 그 중에 3조를 보면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학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수업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대학원 수업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순하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 간서명 란 >

의장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 한 분을 전임 총장께서 공채를 통하지 않고 임용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평의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분이 교수가 되어 센터를 운영하면서 임의로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 학교는 배상금을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는데, 학칙은 물론 그 하위의 중요한 규칙도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들을 줄이는 것이 대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에 특수대학원 수업을 포함’ 하는 것도 전임교수를 특수대학원에서 직접 임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사 이중한 : 평의원의 역할이 학교의 기본적인 것, 철학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냐, 아니면 세부적인 운영부분까지 모두 다루는 것이냐 하는 것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평의원의 기능을 정하여 놓았지만 이 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사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그럼 어차피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평의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잘 정리하여 교내에 상설되어 있는 규정류조정위원회에 회의안건을 제시하고, 그 결과가 피드백 되어 오면 평의원회에서 문제제기하였던 것들이 잘 이행되어 조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시행세칙이 없을 경우에는 법은 취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의원회에서 교육과정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체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검토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의록에서 작성되어 어떻게 follow-up 되고 있고, 다시 다음 번 회의에는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나하는 경과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중한 : 내부적인 검토와 타 대학의 사례를 조사하여 다음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해진 : 다음 번 회의를 할 때는 여기서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회의록은 모두 사인을 하시지만 회의록에 대한 사전 review를 하여 전 회의에서 문제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새롭게 refresh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지적된 모든 것을 다음 회의에 follow-up이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중한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학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2009년 02월 02일

의장 이일영

부의장 이원희

평의원 유승화

평의원 이순일

평의원 유승익

평의원 오상탁

평의원 이화숙

평의원 최인규

평의원 김찬영

평의원 김관균

평의원 이해진

평의원 박상호

평의원 박윤규

간사 이중한

기록 진성호